탄천,양재천(강남구) 제방 보수 보강

[1] 기본	현 황 					
□ 사업개요						
사업기간	□연례반복, ☑2017.01 ~	2018.12				
사업위치	강남구 대치동 78번지 일원	_				
총사업비	총 (국비) (시비) (보조율) (구비) 3,000,000천원 3,000,000천원 0 %					
사업내용	○ 탄천 제방 차수보강					
사업형태	☑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					
사업시행주체	주체 하천관리과(강남구)					
□ 사업 성격 및	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					
신규 계속 투자	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	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	안전예산 출자·출연			
			V			
경상 투자						
□ 사업 담당자						
실 · 국	부서명 과 7	앙 팀장	주무관			

2 예산설명

하천관리과

물순환안전국

이진용

2133-3860

민형일

2133-3887

윤희성

2133-3886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	(X-)	(x-) 1,000,000	(x-) 1,000,000	(X-)
시설비	(X-)	(X-)	(x-) 1,000,000	(x-) 1,000,000	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	세부 산출내역		
시설비	○ 시설비 1,000,000,000원		=	1,000,000천원

□ 연차별 투자계획(투자사업의 경우)

_							
	구 분	계	기투자 (~2015)	2016	2017	2018 이후	비고
	계	(X-)	(_X -)	(_X -)	(_X -)	(_X -)	
		3,000		1,000	1,000	1,000	
시설비	यो संघो	(X-)	(_X -)	(_X -)	(X-)	(_X -)	
	3,000		1,000	1,000	1,000		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○ 탄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제방 제내지측 하단부의 용출수 지점을 차수·보강 하여 제체 안정성을 확보코자 함.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▷ 하천법 제 8조 및 제27조,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▷ 탄천,양재천 제방 정밀안전진단용역(2015.3.12.~10.14)
 - ▷ 탄천,양재천 제방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(2016.04.04.~9.30)

□ 사업내용

○ 위 치 : 강남구 대치동 78번지 일원(탄천 대치유수지 제방)

○ 규 모 : 제방 차수보강 L=450m, H=25m

○ 사업기간 : 2017. 1 ~ 2019. 6

○ 총사업비 : 3,000백만원('17년 1,000백만원)

□ 추진경위

- 2011.10. : 대치유수지 수해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
 - ▷ 제방의 파이핑 및 비탈면 활동 검토결과 불안전한 상태임(안전등급: E등급)
- 2015.3.12.~10.14 : 탄천.양재천 제방 정밀안전진단 용역
 - ▷ 안전성 평가결과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.
 - ▷ (탄천 제방의 안전성평가 : D등급, 누수에 대한 안전성 평가 : E등급)
- 2016.04.04~9.30 : 탄천,양재천 제방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○ 탄천 대치유수지 제방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제방에서 용출수 흔적이 조사되었으며 안전성 평가결과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는

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보강을 실시하여 치수안전도를 확보코자 함.

□ 사업추진절차

- 집행절차
 - ▷ 예산편성⇒ 공사계약 ⇒ 선금지급 ⇒ 공사시행 ⇒ 기성금 등 지급
- 계약체결
 - ▷ 계약심사 ⇒ 입찰공고 ⇒ 현장설명 ⇒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
 ⇒ 업체선정 ⇒ 계약체결

□ 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000,000	
공사시행	2017.01~2017.12	1,000,000	공사시행

4 사업효과

| 5 |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참고자료



